

『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
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이 관 응

나. 제안이유

- 장애등급에서 장애의 정도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계법령과 통일성을 제고하고,
-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 선정기준을 장애등급구간이 아닌 장애의 정도로 변경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개정되어 해당 용어 변경(제6조)
- 우선하여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명칭을 특정 대상자를 지칭하지 않는 용어로 변경(제1조, 제4조, 제5조)
 - (당초) 장애인 등 → 우선대상자
- 관계법령 상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변경(별표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노인장애인과,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2019. 7. 1. 시행)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검토 결과,
 -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,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